

# ITU, Internet 도메인 네임 관리개선을 위한 gTLD-MoU회의 개최

이 흥립  
한국통신 제네바사무소

현행 Internet 도메인 네임(domain name)<sup>1)</sup>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gTLD-MoU회의가 4월 29일부터 5월 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의 ITU본부에서 개최되었다. 현재 미국 독점으로 관리되고 있는 Internet top level domain name의 등록 및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최된 본 회의는 지난해 11월 발족이후 이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해 온 IAHG (Internet 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의 주관으로 IANA, ISOC, ITU, WIPO를 포함, 전세계로 부터 101개 기관, 126명의 대표가 참석하였으며, 향후 Internet top level domain name의 등록업무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은 양해각서(gTLD-MoU)에 대한 논의와 함께 80개 기관 대표가 서명에 참가한 가운데 gTLD-MoU에 대한 서명식을 가졌다. 한편, gTLD-MoU가 5월 1일로 정식 발효됨에 따라 ITU는 앞으로 gTLD-MoU의 관리기관(depository)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MoU 및 서명자 관리와 관련정보의 유통업

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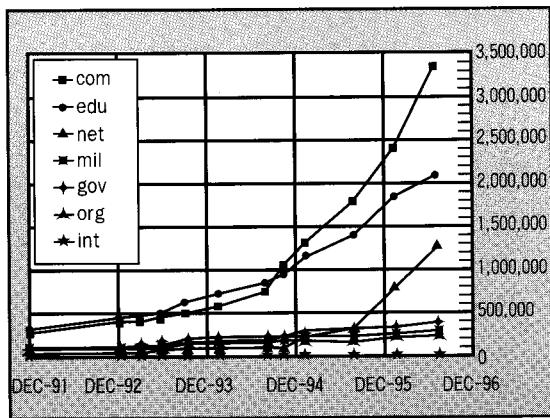
## 회의 개최배경

### 1) Internet의 급속한 성장

'95년말 현재 Internet에 접속된 Host 수는 900만대를 상회하며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매년 50% 이상의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1) 이러한 가운데 gTLD의 등록에 있어서도 .com의 경우, 1일 3,000건 이상 등록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97년 3월말 현재 120만개의 도메인 네임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러한 추세는 많은 기업들이 Web Site의 상업적 혜택을 인식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증가가 예상되며, '97년 말에는 .com의 등록이 2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 Internet상에 접속된 Host 컴퓨터들의 주소를 쉽게 기억하기 쉬운 단어열로 바꾸어 놓은 것을 도메인 네임(Domain Name)이라고 한다. itu.int, cnn.com, kotel.co.kr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위의 예로 든 도메인 네임 중 1차 구분을 나타내는 .int, .com, .kr등을 top level domain(TLD)이라 하고, 이를 TLD중 상업적으로 글로벌하게 많이 사용되는 .com, .org, .net를 일컬어 generic TLD (gTLD)라고 한다.

그림1. Internet 접속 Host수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의한 gTLD 등록업무의 독점은 여러가지 폐해와 함께 관리상의 문제점을 안게 되었으며, 이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특정 등록업무 담당기관의 도메인 네임에 대한 영구권한 주장
- 도메인 네임 등록과 기존 상표권 사이의 분쟁시 효과적 해결장치 미흡 및 미국소재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 초래
- 유명한 상호, 제품명 등에 대한 사전 가로채기 증가
- top level domain의 발전에 관한 정책방향 설정 및 등록업무를 감독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 부재
- Internet 커뮤니티의 이해 대변을 위한 장치 부재
- Internet 도메인 네임 등록업무의 막대한 상업적 가치에 따라 비공인 등록업무 담당기관 중대

## 2) 도메인네임 시스템의 사용현황 및 gTLD 관리의 문제점

현재 사용되는 Internet top level domain은 다음의 4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2. 전 세계적인 top level domain 사용현황 참고)

### ○ 'National' top level domain

각 국가는 각자에게 할당된 ISO 3166 code에 부합하는 top level domain name을 할당받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us, 한국의 경우 .kr, 스위스의 경우 .ch, 호주의 경우 .au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Generic' top level domain

특정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어느 지역 누구에게나 개방된 top level domain으로 기존의 .com, .org, .net가 이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international top level domain으로 칭해졌으나 '94년 RFC 1591[post 94]에 의해 generic top level domain으로 명명되었다. 신청자격 내지 기준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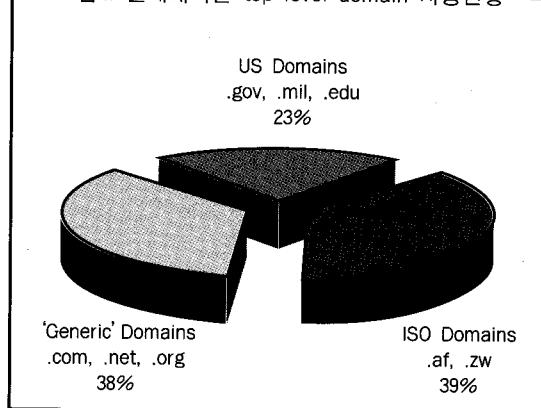
### ○ 'U.S.-only' top level domain

역사적으로 미국내에서만 사용되어온 top level domain으로 정부기구에 의해 사용되는 .gov, 교육기관에 의해 사용되는 .edu, 군 관련 기관에 의해 사용되는 .mil 등이 이에 해당한다.

### ○ 'International' top level domain

진정으로 국제적 성격을 지닌 기관에 할당되는 top level domain으로 .int가 이에 해당된다. ITU, ISO 등과 같은 국제기구 들에 적합하다.

그림2. 전세계적인 top level domain 사용현황



한편 도메인 네임시스템은 1차적으로 IANA (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가 종합 관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도메인 네임 등록 및 배정업무에 있어서는 'national' top level domain에 속하는 second-level 도메인 네임의 경우 IANA와의 계약에 의해 각국별 정부기관이, 'generic' top level domain에 속하는 second-level 도메인 네임의 경우는 미국 내 FNC/NSF(Federal Networking Council/ National Science Foundation)와의 계약을 통해 NSI사 (Network Solutions Inc.)가 독점적으로 담당해 오고 있다<sup>2)</sup>. ('U.S.-only' top level domain의 경우 미국정부가, 'International' top level domain의 경우 IANA가 직접 담당해 오고 있음)

그러나 특정국가, 특정기업에 의한 gTLD 등록업무의 독점은 향후 폭넓은 합의에 의한 이의 발전을 관리해나갈 중심축의 결여와 점차 증대

하는 도메인네임과 기존 상표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장치의 미흡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 3) IAHC 발족 및 보고서 내용

한편 이러한 gTLD 관리상의 문제점은 Internet 커뮤니티 내로 부터 gTLD는 국제적인 자원이며, 일반대중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대두시켰으며(international resource subject to public trust), gTLD 관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종합 검토, 개선할 필요성을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IANA의 요청에 의해 ISOC(Internet Society)의 주도로 '96년 11월 gTLD의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코자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 IANA, ITU, INTA (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ISOC 등으로부터의 11명의 대표로 구성된 IAHC가 결성되었으며, '97년 2월 정책, 기술적 사항, 운영문제 등을 포함한 도메인네임 시스템(gTLD)의 관리개선에 관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되었다.

IAHC보고서는 gTLD를 특정 국가, 기관이 아닌 일반대중에 의해 관리되어야 할 국제적인 공통자원으로 간주하고, 이의 관리개선에 있어서는 Internet의 잠재성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적 규제(self-regulatory) 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도메인 네임 등록업무에 있어서의 경쟁도

2) 기존 gTLD의 경우 FNC/NSF와의 계약에 의해 NSI사가 '93년 부터 '98년 3월까지 등록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한편 .com의 수요증대에 따라 NSF는 '95년 9월부터 년간 508의 비용청구를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95년 9월부터 '96년사이 NSI는 약 2,700만\$의 연간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NSI의 추정에 의하면, '99년에는 이러한 수입이 약 2억\$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입, 일반대중의 이해반영 기능의 제도화, 추가 gTLD의 도입, 도메인 네임에 대한 분쟁의 제도적 해결절차 마련 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gTLD 등록업무에 있어서의 경쟁도입과 일반대중에 의한 관리, 감독기능의 확립이라는 요구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고자 하고 있으며, 일상적인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정책적인 관심사항이 적절하고 다각도의 검토와 입력을 받도록 보장하는 초점을 두고 있다.<sup>3)</sup>

한편, IAHG는 이를 권고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보고서 발표 이후 개선방안의 기본골자를 MoU의 형태로 정리하였으며, 이에 대해 찬성하는 기관들의 서명을 통한 참여를 통해 향후 gTLD의 안정적 운영과 계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할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금번 gTLD-MoU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ITU의 위상과 ITU가 gTLD-MoU에 대한 관리기관(depository)의 역할을 맡기로 한 점 등이 고려되어 금번 회의를 ITU가 유치, 개최하게 되었다.

## gTLD-MoU 요지

gTLD-MoU의 주요내용을 요약,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gTLD의 자율적 관리 틀(self-regulatory framework) 마련

gTLD-MoU의 자율적 관리 틀은 Depository, gTLD Policy Advisory Body(PAB), gTLD Policy Oversight Committee(POC), Council of Registrars(CORE), Administrative Domain Name Challenge Panel(ACPs)로 이루어진다. 이들을 각자가 담당하는 기능에 따라 재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 ● MoU 및 서명자 관리: Depository

- 역할 : MoU 및 서명자 관리와 이들 정보의 유통을 담당한다. 아울러 MoU의 이행에 있어 추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 한다.

#### - 담당기관: ITU

#### ● gTLD 운영 및 등록업무에 일반대중의 이해 반영: POC, PAB

##### a) POC(Policy Oversight Committee)

- 역할 : CORE와 CORE-gTLD에 대한 감독, 관리 및 gTLD-MoU에 바탕하여 CORE 및 도메인 네임 등록업무 담당기관들(registrars)에 대한 정책수립 업무를 담당한다.

- 구성 : IANA, ISOC, IAB, ITU, WIPO, INTA, CORE 등이 지명하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

##### b) PAB(Policy Advisory Body)

- 역할 : gTLD와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에 관한 일반 정책사항에 대해 POC에 권고

3) IAHG의 gTLD 개선안은 gTLD 관리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기반을 마련하고 정부/국제기구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자율적 규제에 의한 gTLD 관리의 장기 해결책 확립과 지속적 발전을 추진코자 하고 있다. 한편, gTLD 개선안은 도메인 네임 신청자로 하여금 가격과 서비스에 바탕하여 등록업무 담당기관을 바꾸는 것을 가능케 하며, 이러한 경우에 있어 기존 도메인 네임의 계속적인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등록업무 담당기관이 TLD를 '소유' 한다는 주장을 배제시키고 사회에 대한 서비스 기구로 자리잡아 가도록 하고 있다.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더불어, gTLD-MoU와 CORE-MoU의 개정과 관련하여 POC에 자문한다.

- 구성 : gTLD-MoU의 서명기관들로 구성
- 등록업무 운영방침 결정 : CORE(Council of Registrars)
- 역할 : gTLD-MoU와 CORE-MoU, 그리고 POC의 결정에 바탕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등록업무 담당기관들(registrars)의 운영방식을 설정하고 이행한다.
- 구성 : 공인된 등록업무 담당기관들로 구성.
- 도메인 네임에 관한 분쟁조정 : ACPs (Administrative Domain Name Challenge Panel)
- 역할 : 도메인 네임 등록과 관련, 도메인 네임과 기존 상표권 사이의 분쟁을 심의, 조정 한다.
- 수행기관: WIPO

## 2) 신규 gTLD 도입

기존의 3개 gTLD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7개의 신규 gTLD를 도입한다.

- .firm: 기업(business)
- .store: 상점(shops)
- .web: Web 관련 활동 기관
- .arts: 문화활동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관
- .rec: 레크레이션 활동 기관
- .info: 정보서비스 기관
- .nom: 개인 Website

한편, 기존의 .com, .org, .net 3개의 gTLD에 대해서는 현재 이들이 관리되고 있는 협정이 만료

또는 적절하게 개정되기까지는 본 MoU에 의한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 3) 등록업무 담당기관(registrars) 선정

관리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전세계를 7개지역으로 구분, 지역별로 4개기관(총 28개기관)을 선정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한다. 선정방식으로는 일정수준의 재정적, 기술적 자격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한편, 등록업무 담당기관이 선정되고 나면, 이들은 상호간 경쟁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며 도메인 네임 신청자는 지역에 관계없이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등록업무 담당기관을 옮기더라도 일단 배정받은 도메인 네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 4) CORE-MoU

CORE(Council of registrars) 활동에 대한 감독, 이와 관련한 정책설정, ACP에서의 분쟁해결 절차 등의 내용이 수록된다. POC(Policy Oversight Committee)와 모든 등록업무 담당기관이 서명하며, POC의 서명에 의해 발효 및 개정된다.

## 5) gTLD-MoU의 검토 및 개정

gTLD-MoU의 개정은 PAB(Policy Advisory Body) 및 CORE와의 협의를 거쳐 POC에서 주관한다.

## 분쟁해결 절차

도메인 네임 등록관리 상의 어려운 문제의 하나는 기존의 지적재산권이 설정된 상표와 일치 또는 유사한 도메인 네임(second-level 도메인 네임)을 상표권 소유자에게 팔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 등록 또는 가로채기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국가 및 지역법원에의 제소는 도메인 네임의 범세계적 성격으로 인해 포괄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등록업무 담당기관이 도메인 네임 분쟁을 해결하거나 이를 위한 절차를 관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상표권의 소유자가 등록신청된 second-level 도메인 네임에 대해 CORE gTLD space의 기본 정책방향에 위배되는지를 손쉽게 판정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관리청에 제소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Internet 도메인 네임 등록의 도덕성과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IAHC에 의한 gTLD 관리 개선안은 on-line 중재(mediation), 제3자 조정(arbitration), ACP(Administrative Domain Name Challenge Panel)의 3가지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중 비중이 크고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인 ACP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ACP의 성격

- gTLD-MoU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gTLD-MoU의 분쟁해결 절차를 관장한다
- 개인이 아닌, gTLD상의 second-level 도메인

네임에 대해 조치 권한을 갖는다 (즉, second-level 도메인 네임의 등록 및 취소에 한정하여 권한을 갖는다)

- 관리기구이며 사법기구가 아니다

### ● ACP의 운영

- WIPO에서 담당하며, WIPO Center에 제소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패널 절차가 개시된다
- 제소내용은 도메인 네임 소지자에게 통보되며, Web을 통해 일반에게 공표된다
- 패널은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 제3자도 패널의 심의과정에 참가 및 의견발표를 요구할 수 있다
- ACP의 결정은 WIPO Center를 통해 CORE에 통보되며, CORE는 모든 등록업무 담당업체들에게 이를 통보하고 ACP의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한편, ACP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CORE-MoU에 포함되며, PAB 및 일반대중의 자문을 바탕으로 POC가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ACP가 사법기구가 아니므로 ACP의 판결과 국가별 법원에의 제소는 별개의 문제이며, ACP의 판정은 후자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회의 주요내용

금번 회의는 gTLD-MoU에 대한 서명 예비회의의 성격으로 ITU의 정부 및 민간회원과 Internet 커뮤니티를 비롯, 본 사안에 관심을 갖

는 모든 기관들에 참석이 개방되었다. 회의는 IAHC 작업배경 및 결과, gTLD-MoU의 내용,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소개 및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3개의 panel session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MoU에 대한 서명식과 gTLD에 관한 새로운 관리체제 하에서 gTLD 등록업무 담당기관(registrar)으로 활동코자 하는 업체들을 위한 information session이 panel session에 이어 개최되었다. 회의개최 배경 및 MoU내용,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서는 앞에서 소개했으므로 회의를 통해 나타난 IAHC의 작업 진행과 MoU 내용에 대한 참석자들의 반응과 의견, 그리고 주최측(IAHC)의 대응을 간략히 정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IAHC에 의한 작업진행 관련

IAHC는 ISOC, IANA, IAB, FNC/NSF, ITU, INTA, WIPO 등 7개기구가 지명한 11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Internet Domain Name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하였으며, '96년 11월 11일 발족 이후 12월 19일에 제안서 초안을 내어놓고, 이후 '97년 1월 17일까지 이에 대한 일반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2월 4일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이처럼 짧은 기간에 작업이 진행되다 보니 Internet 커뮤니티 일각을 비롯, 본 사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선 필요성을 검토 해오고 있던 정부기구들(EU, 미국 등)이 본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며, 향후 Iternet이 갖는 영향과 중요성에 비추어 각 지역, 각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일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ITU나 WIPO와 같은 국제기구가 지명한 대표가 IAHC의 작업에 참석하기는 했으나 IAHC의 작업은 기존에 Internet 관련 기술적, 운영적 측면을 관장해 오던 미국중심의 민간기구들이 주도가 되어 이루어진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연유에서 미국, EU등 정부 및 지역기관들의 경우 본 IAHC의 작업결과와 MoU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을 들어 자신들의 입장표명을 유보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특히 EU 및 일부 EU회원 국가들의 경우 본 작업이 진행되어온 과정과 이 과정에서 EU 및 EU지역내 정부의 참여와 입장반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MoU에 대한 성급한 서명식을 연기(프랑스- 최소한 2개월)할 것과 MoU의 내용에 대해 보다 충분히 검토하고 각 지역의 입장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IAHC에 의한 개선작업 진행과 관련, 기본방향에 대한 지지와는 별도로 MoU의 내용이 얼마나 Internet 커뮤니티 내에서 합의도출 과정을 거쳐, 다수의 이해를 폭넓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참석자로 부터 비판이 제기되었다.

### 2) MoU 내용 관련

MoU가 Internet 커뮤니티 안팎으로 부터의 폭넓은 합의도출 과정을 거치지 못한데 대한 비판과 함께 MoU의 세부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향후 개선방안을 실행해 나갈 주체 및 MoU의 법적지위에 대한 우려 제기와 함께 구체적으

로 일반대중의 이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도 보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다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PAB(Policy Advisory Body) 구성 및 관리문제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IAHC 참여기관이 주축이 되는 POC(Policy Oversight Committee) 활동은 향후 보다 많은 국가와 산업체 대표들이 참여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이해와 의견이 폭넓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EU, 산업체 등). 이밖에 MoU에 따른 gTLD 관리개선과 관련, 초기단계에서 신규 추가되는 7개의 gTLD만이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기존의 3개 gTLD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에 대해 향후 이를 기준 gTLD를 어떻게 포함시켜 나갈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우려와 함께 gTLD관리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리고, 등록업무 담당기관(registrar) 선정방법으로서 추첨제도의 채택과 관련, 이의 적절성에 대한 재고요청이 다수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밖에 복수의 등록업무 담당기관이 도메인 네임에 대한 등록업무를 담당할 경우 도메인 네임 관리의 integrity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아울러, MoU서명 이후 향후 이의 이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일정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 3) 회의 주체측의 대응

한편, 이러한 의견들에 대해 회의 주체측은 일단 domain name 개선작업 추진에 있어 작업진

행이 단기간에 이루어졌고 세부적인 개선방안 및 MoU 내용에 대해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Internet 도메인 네임 관리실태에 대한 개선의 시급성을 생각할 때 MoU에 대한 서명작업이 더 이상 연기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개선작업 진행과정과 관련해서도 일반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이 이미 수렴되었음을 지적하면서, 현 시점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일단 MoU서명 및 이에 따른 도메인 네임 관리 개선 이행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현재의 MoU서명 및 이행이 개선작업의 시작단계이므로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등록업무 담당기관 선정방법으로서 추첨제도 채택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별도 선정기준 마련에 의한 선정심사나 고액입찰자 낙찰방식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한 방법임을 설명하고, 등록업무 담당기관 수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초기에 관리가능한 수준에서 시작하여 향후 점차 확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 고려되었음을 지적했다. 한편, 다수의 민간업체 참석자들은 IAHC측의 개선방안이 다수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 등에 대해 향후 추가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나 일단 현 단계에서 실행하고 미흡한 부분은 점차 개선해 나가자는 IAHC측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 MoU 서명

MoU서명에는 5월1일 시점에서 80개기관이 서

명하였으며, 이중 22개 기관은 서명의사를 회의 이전에 송부했으나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으로써 잠정서명자로 기록되었다. 한편 이날 서명한 기관 중 통신사업자로는 미국의 MCI사, 스웨덴의 텔리아 AB사, 이태리의 Telecom Italia사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정부는 서명자가 없었다<sup>4)</sup>

## 향후 일정계획

MoU가 5월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IAHC가 해체되고, 이를 대신하여 등록업무 담당기관인 registrar의 운영체인 CORE가 설립되기 까지 MoU에 의거 CORE 및 registrar를 위한 정책수립을 담당할 iPOC (interim POC)이 구성되어 CORE-MoU의 마련 및 registrar의 선정 준비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IAHC 멤버로 구성). 아울러 ITU가 gTLD-MoU의 서명자 관리 및 관련정보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iPOC은 registrar의 선정작업이 완료되고 CORE가 구성되면 자동 해체되고, ITU, WIPO, INTA가 지명하는 12명의 대표 (IANA, ISOC, IAB, CORE - 2명, 기타기구 - 1명)로 구성되는 POC가 정식 설립, 운영되게 된다.

gTLD-MoU 이행을 위한 후속작업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CORE-MoU초안이 작성되어 개시되었으며(5.29일), ACPs 지침상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ACPs 지침 개정안이 공표되었다(5.23일). Registrar의 선발과 관련해서는 EU등의 비판을 수용, 추첨에 의한 선정방식과 지역별 안

배 및 수에 있어서의 제한을 폐지하고 일정자격 (재무, 기술측면)을 만족하는 자로 registrar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모두 선정될 수 있도록 당초의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 registrar의 등록신청 및 선발기준 공표를 위한 규정을 준비, 전문기관을 통해 내용을 최종 검토중에 있으며, 늦어도 6월말 이전에는 공표되어 2개월내에 1차 registrar 선발 및 허가작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gTLD-MoU회의 개최 이후 IAHC에 의한 작업진행 방식과 MoU내용에 대한 정부(미국, EC국가), Internet 산업계 일각의 우려 및 비판과 관련, iPOC과 미국, EU 및 Internet 산업계 사이의 협의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신들의 우려와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gTLD 관리의 개선 및 registrar 운영, 정책방향 설정에 있어 자신들의 참여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EU, 산업계 등의 요구와 본 사안에 대해 본 작업을 주도하는 민간기구과의 대화를 희망하는 미국정부의 입장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정부와는 '98년 3월로 기존 3개의 gTLD에 대한 등록업무 담당에 관한 FNC/NSF와 NSI 사이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른 이들 gTLD의 향후 관리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registrar의 선발이 완료되면(8월말로 예상), POC와 registrar들이 CORE-MoU에 서명함으로써 CORE가 발족되게 되어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CORE는 스위스 민법에 의해 구성된

4) 한편 6월 6일 현재 125 기관이 MoU에 서명하였다. 정부로는 Albania가 서명하였으며, 통신사업자로는 일본의 KDD사 등이 추가서명하였다. 한편, France Telecom, Deutsch Telecom 등은 추가로 서명하였으나 나중에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이러한 과정에서 registrar들이 공유하게 될 도메인 네임에 관한 central DB의 구축 및 운영 문제에 대한 검토가 중요한 문제로 현재 iPOC에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불어, registrar에 대한 선발이 완료되어 등록업무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추어 ACPs 활동이 시작되게 되며, 현재 WIPO가 이에 대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평가 및 전망

Internet이 기존 통신망에 이어 유력한 통신매체로 부각되고 있고, 이미 그 상업적 및 사회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Internet 접속 Host의 주소(address)라고 할 수 있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관리체계 개선은 기존 통신망에 있어 범세계적인 번호체계의 정립과도 일견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부터 국가간 협약에 의해 발전되어 온 기존 전기통신망과는 달리 Internet은 그간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발전해 왔으며, 따라서 점차 Internet이 공공의 통신 및 정보매체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도메인 네임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어쨌든 IAHC에 의한 시작된 gTLD-MoU의 관리 개선작업은 현시점에서 일부 보완되어야 할 점과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이 다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일단 시기적절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는 개선 방안의 이행에 있어 정부나 산업체 등 각종의 우려 및 다양한 이해가 어떻게 조화롭게 수렴되고,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들 (MoU의 법적 지위, 분쟁해결 과정에 있어서의 난제 등)이 self-regulatory의 기조 하에서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registrar가 선정되고 CORE가 발족, 활동하기 까지의 몇개월이 금번 gTLD의 관리 개선노력에 있어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ITU는 금번회의의 유치, 개최나 MoU 관리기관(depository) 역할담당에 대해 사전 정부 회원들과의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한 데 대해 미국정부로 부터의 항의 등 일처리 절차와 관련 비판을 받고 있는 형편이나 금번 ITU의 시도는 급변하는 전기통신 환경하에서 신속하게 대처하여 ITU의 주도적인 위치를 유지코자 하는 ITU의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ITU가 미래 개혁방향 설정을 위한 ITU-2000 작업그룹의 운영에서 정부 회원들의 이해가 엇갈려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한 점 등을 생각할 때 이는 ITU의 개혁과 주도적 국제전기통신기구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 정립을 위한 하나의 새로운 시도로도 생각되는 바 금년 6월 정기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정부들의 반응과 평가가 주목되고 있다. 